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40271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주식회사 휴비콘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52, 205(고잔동, 우석빌딩)

대표이사 송현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교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선영

피 고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한솔제지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00(을지로2가)

대표이사 한철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황재걸

변론종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4. 10. 체결된 "전북집단에너지 환경설비 납품 및 설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 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및 "[전북집단E]환경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01,937,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4. 10. 체결된 "전북집단에너지 환경설비 납품 및 설치" 및 "[전북집단E]환경설비제작및설치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너지 사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송수계 전 피고 한 솔이엠이 주식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한솔제지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2. 4. 1. 피고 한솔이엠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피고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와 피고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한솔제지 주식회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10. 피고와, ① 피고가 전북집단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전북집단에너지 환경설비(배연 탈황 및 탈질) 설치공사 중 환경설비 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하도급공사명: 전북집단에너지 환경설비 납품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및 설치), ② 위 설치공사 현장에 Flue Gas Treatment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계약명: [전북집단E]환경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을 체결하였다(이하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두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100-000-201904786647호,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100-000-2019016938 05호,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및 물품을 납품, 설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로 원고가 설치한 시설을 '이 사건 설비'라 한다), 피고는 2020.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 공사와 잔여 잔업 및 Punch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공사완료확인서를 교부한 이후인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전북집단에너지 주식회사는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에게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원고는 2020. 7.경 피고에게 2020. 8. 10.경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작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바. 피고는 2021. 1, 1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 보수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증권번호 제100-000-20190478 6647호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으로 102,267,000원을 청구하였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21. 1. 15.경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위 마.항과 같이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1. 1. 22.까지 의견서 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비에 발생한 하자는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보수해 주지 않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파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이제욱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제21조 제3항, 제4항은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고, 원고가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고,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2, 4항은 '하자보증기간 중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결격품을 완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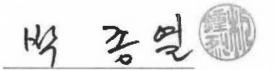
전품으로 즉시 대체하거나 피고가 만족할만한 상태로 설치, 보수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가 하자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설비 중에 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원고의 설치상의 잘못으로 일부 하자가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 합계 92,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되는 사실이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설비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인 101,9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101,937,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기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열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판사	고지은	卫	21	2	
판사	김동일	72	等	쉳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3.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주사 황규석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 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 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